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영동)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4층
Tel | 043-252-7109 Fax | 043-253-0177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공제구분

▶ 학교폭력

▶ 심리상담

▶ 여행자

공제급여 제도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장례비 기타(위로금)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학교 안전사고 발생	
공제가입자(학교장) ▶ 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통보 방법(①, ② 중 선택) ① 사고 등록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통보 ② 사고 등록 → 학교장 휴대전화번호 선택 입력 시 승인 요청메세지 전송 → 학교장은 내용 확인 후 승인(통보) 	

요양(치료) 후 서류 준비	
청구인(피공제자·보호자 등) ▶ 공제회 또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에 따른 경우 해당) • 청구인 통장 사본(온라인 청구 시 생략) • 청구액 50만원 초과 시 → 진단서 추가 <p>☞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p>	

청 구	
청구인(피공제자·보호자 등) ▶ 공제회 또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 방법(①, ② 중 선택) ① 공제회로 제출 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학부모시스템 접속 → 모바일 인증 로그인 → 청구서 등록 ② 학교로 제출 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학교시스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 청구서 등록 <p>☞ 팩스 또는 우편(등기) 제출도 가능</p>	

심사·지급 여부 결정	
공제회 ▶ 청구인 및 공제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 사항 알림 ☞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범위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급여]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보상 대상"
* 상급병실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 "일부 항목" 보상

구분	보상대상인 주요 비급여 항목		
자기 공명영상 (MRI)	1회 인정 (의사 소견의 사유에 따라 추가 인정 가능)	보 철	치아 1대당 500,000원 범위 내(2회 인정)
	인정	캐스트코어· 포스트·레진	치아 1대당 150,000원 범위 내(1회 인정)
초음파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아 1대당 2,000,000원 범위 내(1회 인정) (다만, 보철비 지급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 지급)
		구 분	지급기준
	수술비 (수술비, 레이저 치료비)	선상흉터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 (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
		면상흉터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함몰	연조직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무통제	인정	레이저치료비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	25cm ² 미만: 153,540원/회 25cm ² 이상 100cm ² 미만: 255,900원/회 100cm ² 이상: 358,260원/회
		진단서	1부 인정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초과 시 제출)

보상되지 않는 주요 비급여 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상급병실료 (1~3인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조직 재생·강화·보충 등을 위한 주사제 및 치료재료 등
-------------------------	----------------------------------------------	------------------	-----------------------	--------------------------------------



① 청구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만 가능한가요?

Ⓐ 치료 중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② 피공제자의 실손의료보험과는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교통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받은 경우, 교직원 사고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 사고관련자로부터 배상받은 경우 등)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상환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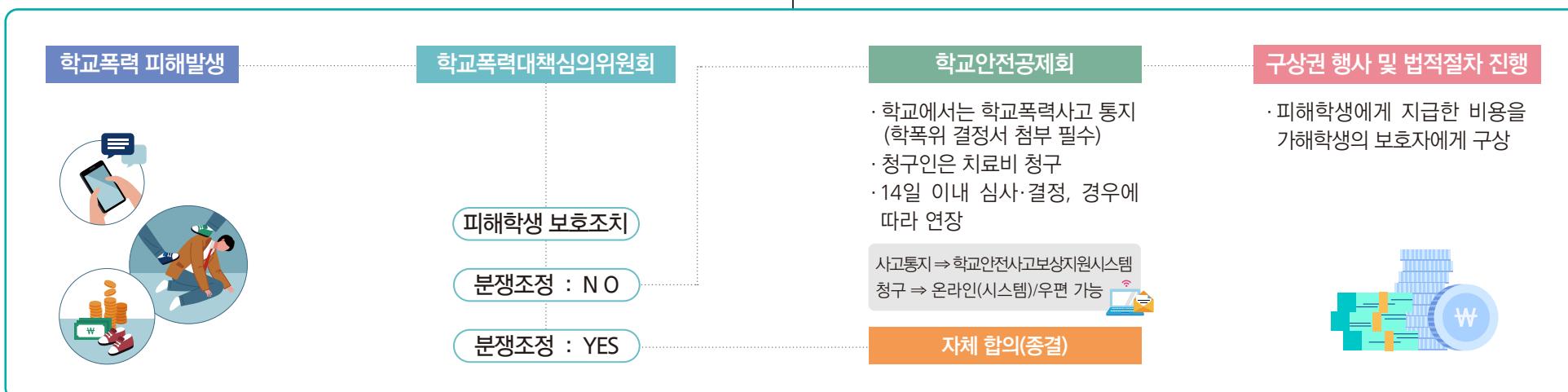
구분	세부사항	인정기간	보상심사위원회 결정 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	30일	

* 교육감 지정 기관은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문의

지원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처리 절차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

학교폭력사고통지 시(학교)

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치료비 청구 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일반진단서(공제회에서 요청 시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청구인 통장사본(온라인 청구 시 생략)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보상업무에서 출력하여 활용

주요 문의사항

Q 청구하는 모든 비용이 인정되나요?

A 치료비 등의 결정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이미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치료비(합의 포함)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Q 학교장의 자체해결의 경우에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학교장 자체해결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안경 등 재산(물품)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재산(물품)과 관련된 피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정신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대상 | 피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원기간 | 1년 범위 내(연장 가능)

*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지원신청 기간 및 비용청구 기간

지원 신청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용 청구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처리 절차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신청내용 심의·의결	지원·연장 확정	결정 내용 통지	지원 대상에 확정되는 경우 치료비 용 청구 가능
치료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피해자	학교안전 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지원·연장 대상자 확정 통보	치료 종결 후 비용 청구	치료 방법·비용 적정성 심의	결정통지 및 비용지급		
	학교안전 공제회	청구인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서류

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

상담·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원본)

기타 서류(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치료비용 청구 시(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상담·심리 치료비용 청구서(원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약제비·계산서 영수증(원본)

청구인 통장사본

기타 서류(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보상업무에서 출력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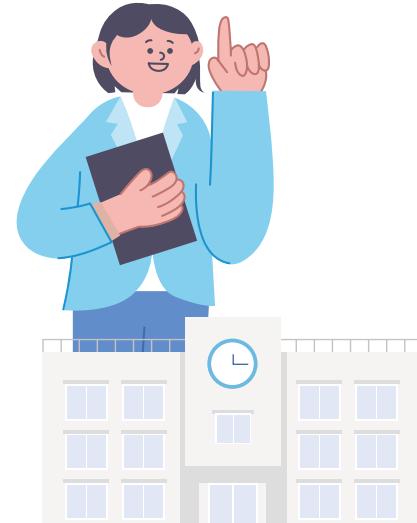


교원보호공제 사업

“
교사 한 분 한 분이 안전해야 학교가 안전합니다.
교원보호공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

공제가입자

충청북도교육감



운영기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기간

2025. 3. 1. ~ 2026. 2. 28.

가입대상

- 관내 교원(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행정기관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 정규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수업에 한함)에 포함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 교육전문직원

보상한도

연간 총 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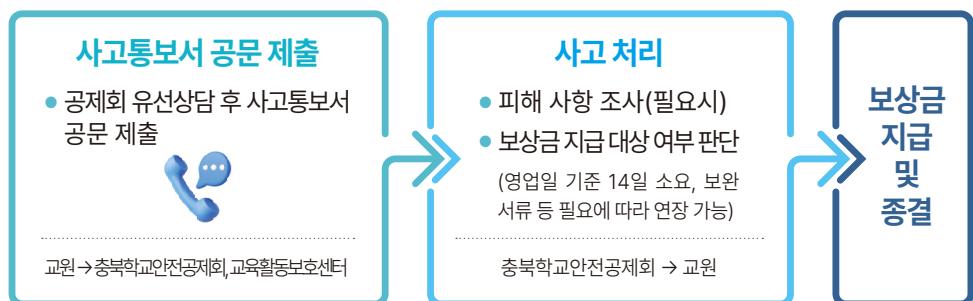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분	내용	지원(사고당)
법률적 손해상상책임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최대 2억원 한도
교원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 시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 시	민·형사상 소송비 1사건당 1인당 심급별 6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갈등 조정 서비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조정 및 컨설팅 지원 * 갈등조정 지원관(교육전문가, 변호사 등)이 소송 전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갈등 조정 실시	33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출·퇴근 시간포함 최대 20일(2인 출동시 10일)
피해보전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재산상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 노트북, PAD, 태블릿PC에 한하여 1인당 1사고당 최대 30만원 이하로 수리 실비 지원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만원 한도내에서 사고발생일 기준 교환가치(시가) 지원	15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 교원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고의,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원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공제회가 함께합니다!
”

여행자공제 사업

안전한 체험학습, 든든한 보장! 2025년, 여행자공제 업그레이드! **2025년 9월부터 보장범위 확대 · 일괄 가입제 시범운영** (건별가입)+(일괄가입) 함께 운영합니다.

여행자공제 업그레이드, 이런 점이 좋아요!

- 연 1회 가입으로 모든 학교 밖 활동 보장!
- 보장금액 확대와 보장기간 연장으로 더 든든하게!
- 교직원 업무 부담은 줄이고, 학생 안전은 높이고!
- 분실·도난 보장과 긴급조치비 신설로 한층 더 안전하게!



유의사항

- 당일 계약 불가!
최소 계약일
1일 전 가입 필수
- 일괄 가입 시,
학년별 가입 불가!
일괄 가입은
전교생 인원 가입이 원칙
- 필수 가입 아님!
보장내용 확인 후 민간 보험과
비교해 똑똑하게 가입

가입대상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치료비	2,000천원	사고일부터 27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 ~ 3인실)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 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5,000천원	사고일부터 270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학교안전사고 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50,000천원	사고일부터 90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500천원	사고일부터 7일(접복기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500천원	사고일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의자, 보조기 등)는 제외하나 *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에 한하여 분실, 망실, 도난 보장 (신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신설	500천원	여행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 이송한 경우 발생한 구급차 이용료,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지급

공제료

• 건별 가입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유치원	560원	560원	760원	1,070원	1,170원
초등학교	1,020원	1,020원	1,420원	1,930원	2,240원
중학교	1,220원	1,220원	1,630원	2,140원	2,440원
고등학교	1,530원	1,530원	2,040원	2,650원	3,060원
교직원 등 성인	1,530원	1,530원	2,040원	2,650원	3,060원

• 일괄 가입(2025. 9.~2026. 2.)

급별	단가
유치원	470원
초등학교	860원
중학교	1,040원
고등학교	1,160원
교직원 등 성인	1,290원

• 일괄 가입(2026. 3.~2027. 2.)

급별	단가
유치원	940원
초등학교	1,720원
중학교	2,070원
고등학교	2,320원
교직원 등 성인	2,580원

구비서류

담보내용	제출서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시) 등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진단서(질병명 기재) 등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사망진단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진단서(전염병 내용 기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수리내역서 •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등 • 학교(분실) 확인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 영수증(택시비, 구급차 이용료 등)
공통서류	• 청구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입신청절차



사고통지 및 여행자공제 청구절차



* 여행자 공제금 신청시 '공제급여여행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상 '공제급여 신청' 불필요

- 처리현황 조회 시, 치료비 신청 시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치료비 신청 상황 조회 가능

* 동일 사건으로 공제급여도 청구 시, 공제급여 지급 확정 후 14일 이내에 여행자공제금 심사 및 지급

